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정 부 출 연 연 구 기 관 등 의
설 립 ·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한덕수 (국무조정실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법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과 「물품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(안 제2조)

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심사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
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) ① (생 략)	제2조(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 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.
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</u> <u>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</u> <u>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	
연 락 처	(044) 200 - 2572